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·상해·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,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,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,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,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9894호, 2024. 1. 2 공포., 2025. 1. 3. 시행)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, 이용권의 취소 또는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,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제공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·상해·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,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나. 제공인력이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·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,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다. 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식을 신설(안 제11조의2 신설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, 제11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)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의2(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등) ①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.

③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.

제16조의2(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)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제공

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 1 제2호의 기관보호서비스의 서비스 전용면적에서 지원상담 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비스 제공공간 33㎡ (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.3㎡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)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제공공간의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별표 1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유형별 배치기준

유형	기관보호서비스			재가방문 서비스	활동보조 서비스
	장기보호 서비스	단기보호 서비스	지원상담 서비스		
제공기관의 장	1명				
관리책임자	1명(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1명씩 추가한다)				
제공인력	이용자 4명 당 1명 이상	이용자 7명 당 1명 이상	<u>보건복지부장관 이 별도로 정함</u>	10명 이상 (농어촌지역 의 경우 3명 이 상)	<u>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</u>

비고

1.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.
2. 제공기관의 장, 관리책임자 또는 나목2)다)에 해당하는 인력은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없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
3. 제공기관의 장(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, 관리책임자(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공인력(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만 산정한다.
4. "농어촌지역"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·군 지역 중 읍·면은 전 지역, 동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

따라 지정된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.
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별지 제5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및 제한 기준(제4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다.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사회서비스이용권 제한기간 만큼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은 서비스 개월 수로 나누어 이용자의 이용권에서 매달 감량할 수 있다.
- 마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
- 1) 경미한 위반: 주의 또는 경고
 - 2)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: 주의 또는 경고
 - 3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: 주의 또는 경고
- 바. 마목에 따른 감경 처분에도 불구하고, 경고가 2회 누적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 이 때, 주의 2회는 경고1회로 본다.
- 사. 위의 일반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긴급한 상황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서비스 취소 또는 제한을 아니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- 가.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취소한다.

나.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: 다음 표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한다.

부당이득금액	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한 기간
10만원 미만	15일간 서비스 제공 중지
10만원 이상 ~ 20만원 미만	1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20만원 이상 ~ 30만원 미만	1개월간 15일간 서비스 제공 중지
30만원 이상 ~ 60만원 미만	3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60만원 이상 ~ 100만원 미만	4개월 15일간 서비스 제공 중지
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	6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200만원 이상 ~ 300만원 미만	7개월 15일간 서비스 제공 중지
300만원 이상 ~ 500만원 미만	9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5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	10개월 15일간 서비스 제공 중지
1,000만원 이상	12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
다.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: 다음 표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한다.

금지 행위	근거 법조문	이용권 제한기간
1)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 · 대여 또는 권리 이전	법 제15조제1항	6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2)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 수령	법 제15조제2항	
3-1) 이용자가 폭행·상해·성폭력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가) 해당 사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	법 제15조제3항	12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나)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,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	법 제15조제3항	6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다) 고소·고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로서 시군구청장이 당사자 간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법 제15조제3항	3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3-2) 이용자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5조제3항	3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4)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	법 제15조제4항	1개월간 서비스 제공 중지

[별표 3]

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(제16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반행위의 정도, 내용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,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자격 정지 기간
가.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	6개월
나.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·알선·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	3개월
다.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	12개월
라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	법 제23조의2제2항제4호	8개월

범죄경력조회 요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제공자명			
	주 소 (전화번호:)			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)			
	주민등록번호	외국인등록번호/국적(외국인인 경우만 작성)		
	주소			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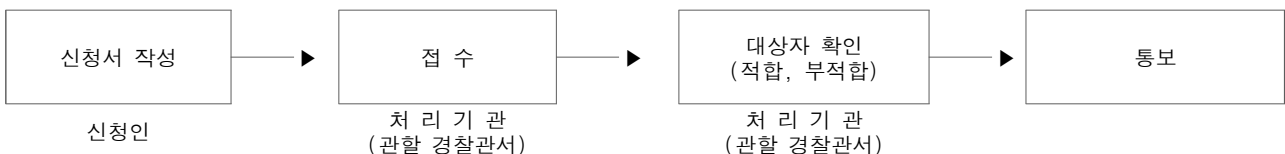
경찰관서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제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 1부 2. 제공인력 본인의 동의서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,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.
2.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연 번	성명 (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)	주민등록번호	외국인등록번호/국적 (외국인인 경우만 작성)

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	
	주민등록번호	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만 기입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	

본인은 ○○ 제공자 제공인력으로서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

(서명 또는 인)

경찰관서의 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개인정보 수집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
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범죄경력조회 회신서

신청인	성 명		
	주 소		
대상자	성 명		
	주민등록번호	외국인 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에만 기입)	
	주 소		
범죄경력	☐ 있음(취업제한대상자) ☐ 없음		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경찰관서의 장 직인

유의사항

1.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(영문),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범죄경력란에는 해당사항에 ○,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) ①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 따른다.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범죄경력조회 요청 등) ①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. 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. ③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.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제공인력의 자격정지

	<u>기준)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 른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27